**[양식 제68호]** 주식회사 지점이전 등기

|  |  |  |
| --- | --- | --- |
|  | **주식회사 지점이전 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
|  |  |  |  |
| 상 호 |  | 등기번호 |  |
| 본 점 |  |
| 등 기 의 목 적 |  |
|  등 기 의 사 유 |  |
| 등 기 할 사 항 |
| 지 점 | 명 칭 |  |
| 소재지 |  |
| 이전연월일 |  |
| 기 타 |  |
| 등록면허세 | 금 원 | 지방교육세 | 금 원 | 농어촌특별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등기신청수수료 | 금 원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첨 부 서 면 |
|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 <기 타> |
|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알림서비스(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 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1.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  |  |  |
| --- | --- | --- |
|  | **주식회사 지점이전 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
|  |  |  |  |
| ①상 호 | ○○ 주식회사 | ②등기번호 | ○○○○○○ |
| ③본 점 |  서울특별시 ○○구 ○○로 ○○ |
| ④등 기 의 목 적 |  지점이전등기 |
|  ⑤등 기 의 사 유 |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
| 등 기 할 사 항 |
| ⑥지 점 | 명 칭 |  △△지점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구 ○○로 ○○ |
| ⑦이전연월일 |  20○○년○월○일  |
| ⑧기 타 |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지배인 ○○○ 인천광역시 △△구 ○○로 ○○(△△지점) 20○○년○월○일  |
| ⑨등록면허세 | 금 원 | 지방교육세 | 금 원 | 농어촌특별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등기신청수수료 | 금 원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  |
| ⑩첨 부 서 면 |
| 1.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통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 <기 타> |
| 년 월 일 ⑪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알림서비스(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 - 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 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1.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용지규격 21㎝× 29.7㎝)

|  |
| --- |
|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 |

󰁨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이란

주식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같이 회사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다만, 지점의 영업에 한함)를 말하며 지점의 이전은 지점의 설치와 같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까지 정하고 최소행정구역 이외의 장소로 지점을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이전하였을 경우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주식회사의 지점이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 지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지점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점이전등기 신청은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 ② 등기번호, ③ 본점**

법인 등기부의 상호, 등기번호, 본점소재지를 각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지점이전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지점(명칭/소재지)**

이사회에서 이전하기로 결의한 신 지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지점소재지는 소재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도 소재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합니다.

**⑦ 이전연월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지점으로의 이전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기타(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제목 및 등기의 목적 란에 “지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등기신청” 으로, 등기의 사유 란에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지점이전 및 지배인 ○○○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⑨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기재합니다. 또한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는 지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⑪ 신청인 등**

법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이사회 의사록**

가. 주식회사의 지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의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절차를 거친 후 지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최소행정구역까지 기재되고 지점을 최소행정구역 이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거친 후(공증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지점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

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둔 경우 각 이사가(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함) 회사를 대표하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실무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이전장소, 이전일자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지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인, 위임인,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 2주간 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상은 주식회사의 지점이전에 대한 등기 신청 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 바, 지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 지점이전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